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

이상헌, ILO

최근 들어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핵심변수로 삼아 경제성장 동학을 분석하는 포스트케인지안 (Post-Keynesian)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시경제모델과 실증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다. IMF, OECD,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경제기구들의 분석도 늘어나고 있다.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를 상정해 왔던 기존 성장모델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켜왔다는 분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들 연구는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의 수준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을 거시경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문제, 또는 이차적인 문제로 보는 통상적인 경제정책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득분배가 경제정책의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소득분배는 복잡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결정된다. 최근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술변화, 산업구조 변화, 세계화 등과 같이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요인들도 있지만, 동시에 노동시장, 생산물 서비스 시장, 금융시장과 관련된 제도적 정책적 요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노동시장에서 협상력을 결정하는 제도적 요인과 “금융화” (financialization)로 지칭되는 금융시장의 제도적 변화는 최근 소득분배 악화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생산물과 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력 (market power) 확대와 이로 인한 소득분배 변화다. 시장지배력 확대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및 기타 관련 소득분배 지표의 악화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연구결과의 정책함의는 적지 않다. 우선,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을 의미한다면, 이는 가능한 (viable) 경제전략이다. 총수요의 구조적 부족 상황에서 특히 유효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능성의 현실화는 어떤 정책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단순한 임금인상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책개입은 1 차분배 (시장소득)와 2 차 분배 (가처분소득) 양쪽 영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후자의 경우 사회보장 (social protection)이 핵심적이다. 시장소득의 경우, 기업과 노동간의 분배 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분배 (e.g.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와 노동간의 분배 (e.g.,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주요한 정책영역이다. “지대 추구 행위” (rent-seeking behaviour)를 막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경쟁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중요하다. 조세와 재정지출 관련 정책도 유기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공급측 요인을 무시하지 않는다. 혁신과 R&D 를 무시하는 경제성장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요부족이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이력현상” (hysteresis)과, 시장지배력 강화로 인한 불평등 확대가 혁신 유인을 줄이는 현상에 주목한다. 투자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투자 확대의 절대적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 동시에 이윤 확대가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과, 특히 이런 현상이 소득 압박에 따른 소비 위축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시에, 민간 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힘든 사회적 서비스나 친환경 기술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조한다.

또한 정책적 정합성 또는 보완성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일반균형적 효과는 노동소득, 노동비용, 가격, 생산성, “지대 이전”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가령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노동비용 효과는 적절한 경쟁정책이나 가격정책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노동소득 효과는 임금결정제도와 사회보장 정책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정책들의 보완적 역할 없이는 최저임금의 “의도한 효과”를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고, 최저임금의 “과부하” (over-burdening)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분배 문제를 중시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경제전략은 다양한 경제세력 간의 이해 조정과 타협을 요구한다. 새로운 사회적 협약 (social contract)이 필요하다.